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함께하는

청림[·]한[·]세상

소통·화합·참여를 통한 2014 클린 JPDC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I. 2013년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및 개선방향	1
II. 2014년 청렴·부패방지 시책 추진방향	9
1. 2014년도 청렴·반부패 정책 환경	11
2. 2014년도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12
III. 2014년 클린 JPDC 추진계획	13
1. 청렴 인프라구축 및 마인드 강화	13
2.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15
3. 청렴 공감 제도 개선	16
4. 청렴문화 환류 및 확산	16
IV. 클린 JPDC 추진체계 구축	19
1. 클린 JPDC 구성 및 운영 방안	19
2. 클린 JPDC 세부 추진 체계	20
V. 클린 JPDC 연간 추진일정	21
VI. 중점 분야별 청렴도 향상 방안	23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39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바로 알기	47

**2013년도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및 개선방향**

I. 2013년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및 개선방향

1 20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및 평가

종합청렴도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제주개발공사	7.70	8.22	7.53
지방공사 평균	7.88	8.06	7.93
전체기관 평균	7.86	8.09	7.93
우리공사 전년대비	-0.11 (7.81)	+0.11 (8.11)	+0.30 (7.23)
지방공사 평균대비	-0.18	+0.16	-0.40
전체기관 평균대비	-0.16	+0.13	-0.40

○ 우리 공사 종합청렴도는 7.70점으로 전년대비(7.81) 0.11점 하락 하였으며, “3등급(보통)”으로 평가

- 타지방공사 대비 0.18점 낮고, 전체기관 평균보다 0.16점 낮음

○ 주요 하락요인

- 부패사건 발생 및 청렴도 평가시 신뢰도 저해행위

감정대상	감정항목	감점
종합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0.24점 (2012년 0.00점)
	신뢰도 저해행위 (호의적 평가유도)	0.10점 (2012년 0.07점)
	감점 총계	0.3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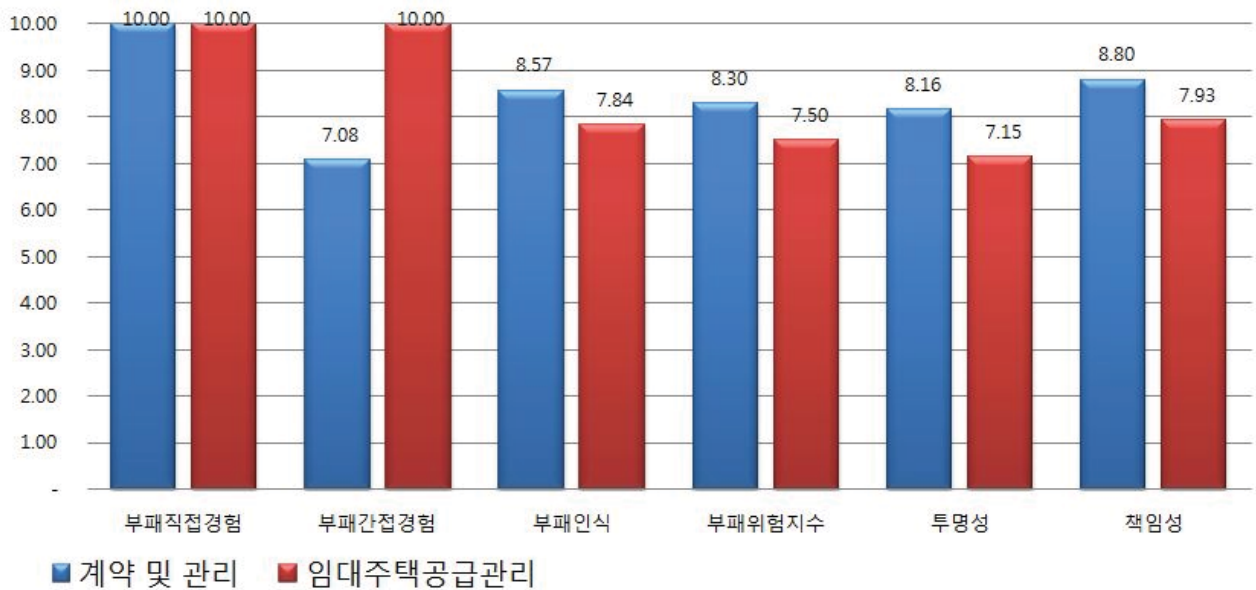
※ 종합청렴도 측정방법 = 외부청렴도의 73.5% + 내부청렴도의 26.5% - 감점

(참고) 2010년부터 내부청렴도(7.20→7.51→7.23→7.53) 계속 저조(하위권)

외부청렴도

- 외부청렴도(8.22)는 지방공사 전체평균(8.06)보다도 0.16점 높게 평가 되었으나, 34개 전국 지방공사 중 외부청렴도(8.22)는 13위

업무별 외부청렴도 지수항목별 비교표



○ 취약요인분석(업무별)

◆ ‘계약 및 관리’ 업무

: 모든 지수에서 고르게 점수를 얻었으나 부패 간접경험(7.08)이 취약항목으로 측정되어 청렴의식, 부조리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임대주택 공급·관리’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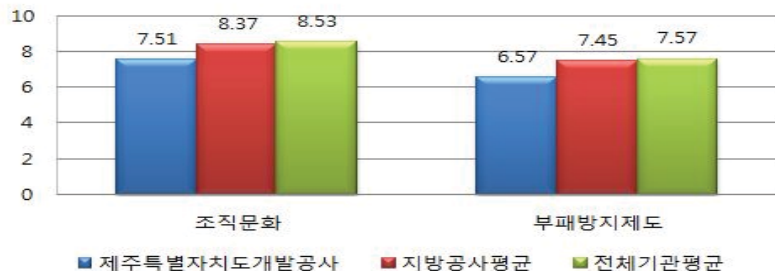
: 부패위험지수(투명성 및 책임성지표)가 취약분야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와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이 낮다고 조사되어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통한 외부 민원인의 신뢰도 제고 필요

내부청렴도

- 내부청렴도(7.53)는 지방공사 전체평균(7.93)보다도 0.40점 낮게 평가되었으며, 34개 전국 지방공사 중 28위

□ **내부청렴도 지수 항목별 비교표**

청렴문화지수



항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방공사평균	전체기관평균
조직문화	7.51	8.37	8.53
부패방지제도	6.57	7.45	7.57

□ 청렴문화지수

지방공사 및 전체기관
평균 보다 낮음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 내 공감대 형성이
필요

업무청렴지수



항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방공사평균	전체기관평균
인사업무	7.97	8.2	7.93
예산집행	8.44	8.22	8.06
업무지시 공정성	6.63	6.76	7.02

□ 업무청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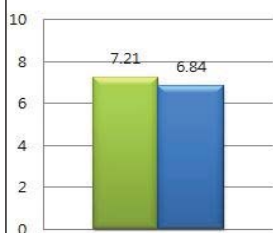
청렴문화지수에 비해
지방공사 및 전체기관
평균과 큰 차이가 없음

⇒ 인사부분에 부패 간접
경험 有 조사

⇒ 내부청렴도 중 업무

지시의 공정성 부분이
가장 취약 부분으로
직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인사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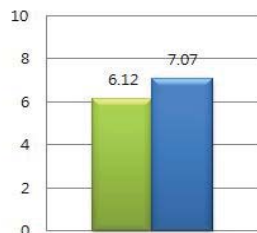
구분	점수
경험	7.21
인식	6.84

예산집행



구분	점수
경험	10
인식	8.18

업무지시 공정성



구분	점수
경험	6.12
인식	7.07

- 취약요인분석 (지수 항목별)

◆ **‘청렴문화지수’ 분야**

: 타지방공사 대비 0.87점 낮고, 전체기관 평균 대비 1.01점 낮은 점수를 얻어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에 있어 내부 신뢰도가 낮아 청렴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인사업무’ 분야

: 부패직접경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간접경험이 있고, 부패인식 항목에서 금품 및 향응이 인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인사청탁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필요함

◆ ‘예산집행’ 분야

: 위법, 부당집행 경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타 지방공사에 비해 위법·부당집행이 있을 것 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으므로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 공개 등 관리가 필요함

◆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

: 내부청렴도 중 가장 취약분야로 평가되어 부서장 및 직원들간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업무지시에 대한 의견 교환과 공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2 반부패 경쟁력 측정 결과 및 평가

2013년 반부패 경쟁력 측정 결과

평가 유형		제주개발공사	공공기관 (V그룹)	전체평균
반부패 의지 노력 (90%)	반부패 인프라 구축	65.8	82.4	86.3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80.1	81.7	84.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80.6	78.8	79.3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77.3	90.6	92.0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80.0	84.5	85.2
부패방지 성과 (10%)	청렴도개선	49.98	74.0	74.0
	부패공직자 발생	76.12	92.7	88.8
합 계		76.0	83.0	84.1

- 우리 공사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76.0점**으로 전년대비(81.4점, 우수 등급) 5.4점 하락하였으며, “**3등급(보통)**”으로 평가
- 공공기관(기관 유형별 V그룹) 평균 대비 7.0점 낮고, 전체기관 평균보다 8.1점이 낮음

○ 취약요인분석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분야

- 청렴업무 및 활동에 공사 구성원 참여 협의 실적 미비
 - 일상감사 참여 실적(검토결과 성과) 및 자체감사활동을 통한 부패행위 자체적발 실적 없음
- : 조직구성원의 청렴업무 추진 과정 참여 등 자발적 청렴기반 구축 필요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분야

- 2013년도 업무추진비 등 월별 사용 현황 일괄공개, 공개내용이 유형별 건수와 합계금액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알 수 없음.
: 추후,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까지 공개 필요하며, 청렴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하여 정책 집행의 객관성 확보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분야

- 내부청렴강사 양성, 부패 위험 분석 및 실적 미비
: 공사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전수 실시 필요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분야

- 고위직 자율시책이 CEO 단독 활동으로 미흡하며, 고위직 청렴 리더십 확립 미흡
: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이 필요하며, 기관 간 협력활동 추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실질적 개선방안 도출 필요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분야

- 행동강령 내용이 개념적, 선언적이므로 구체적 행위기준 필요.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강화 노력

**2014년도
청렴·부패방지 시책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II. 2014년 청렴·부패방지 시책 추진방향

1 2014년도 청렴·반부패 정책 환경

-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 ('14. 1. 1, 대통령 신년사)
 -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램 ('14. 2. 5. 권익위 업무보고)
-
-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패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제대로 개선하고, 이를 전 분야로 확산하여 국민신뢰 회복
 - 정부가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고질적인 횡령·부정수급 빈발 우려
 - ◆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적발·처벌 차원의 대응을 넘어 재정누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 추진
 - 「비정상의 정상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비리가 집중 부각되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개선 활동을 적극 알려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도 개선의 전기를 마련

2 2014년도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비 전

소통·화합·참여를 통한 클린 JPDC 구현

2014년 목표

- ◇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종합청렴도 8.45점 이상)
- ◇ 반부패경쟁력 평가 1등급 달성

추진 전략

1. 청렴인프라 구축 마인드 강화
 - ‘클린 JPDC 추진단’ 및 ‘클린 JPDC 실무추진팀’ 구성·운영
2.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
3. 청렴 공감 제도개선
4. 청렴문화 환류 및 확산

Ⅲ. 2014년 클린 JPDC 추진계획

1 청렴인프라 구축 및 마인드 강화

1-1 참여형 청렴환경 조성

■ 청렴의식 진단을 위한 클린 JPDC 추진체계 구축

- ‘클린 JPDC 추진단’ 구성 · 운영
 - 클린 JPDC 추진실적 평가 · 조언
- ‘클린 JPDC 실무추진팀’ 구성 · 운영
 -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본부별 청렴지킴이 선정
 - 청렴 중점과제(취약분야) 선정 및 발굴, 홍보
-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도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평가 계획’ 통보 이후
(측정 기본방향, 세부계획 선정 요)

■ 사이버 청렴 퀴즈대회 개최로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

- 운영목적 : 대상을 고려한 청렴 퀴즈대회 별도 개최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문화 정착
- 운영방법 : 청렴 퀴즈대회 연 1회 개최
- 보 상 :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 및 상위 입상자 포상

1-2 행동강령 관리체계 강화

■ 『청렴주의보』 발령으로 취약시기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인사 및 명절 등 청렴 취약시기에 업무포털시스템 내에 『청렴주의보』
발령 팝업창 게시로 강력한 주의 촉구
- 행동강령 위반 가능 사례 및 청렴 위해요소 사전 예보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행동강령 이행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자, 행동강령 실천 우수 사례 제공자 등 청렴 마일리지 부여 및 포상
- 행동강령로그인제도 지속적 시행(행동강령 문제 수정 및 추가)

■ 비위 임·직원 현황관리 D/B화

- 부패 발생시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 입력 조치

1-3 |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문화 조성

■ 클린 명함 제작

- 제작 대상 : 부패 취약분야 담당직원(계약, 공사, 임대주택, 인사, 등)
- 명함 활용 : 업무협의를, 계약체결, 공사감독 등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 예시(부서별, 업무별로 알맞게 제작)

 www.jpdc.co.kr	
부	성 명
695-9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Tel 064-780-0000 Fax 064-784-0000 H.P. 000-000-0000 E-mail :	


❖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 업무처리결과와 이의제기, 불편사항, 문의사항 등은 클린신고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클린 신고센터 >
▶ 클린신고 직통전화 : 064) 780-3534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1-4 | 청렴 인센티브 강화

■ 청렴마일리지 누가 적립시스템 시범 운영

- 대 상 : 전 직원
- 운영방법 :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2013.10 제정)에 따라 청렴마일리지 누적관리제 시범 운영
- 인센티브 : 마일리지 우수기관(우수자) 포상 및 기관(부서) 청렴마일리지 이행실적은 조직성과평가에 반영 검토(기획혁신부와 협의 후)

2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2-1 부패 취약분야 집중 모니터링

■ 청렴도 측정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 목적 : 반부패·청렴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도 향상방안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관리
- 분야 : 외부청렴도 측정 2개 분야, 내부청렴도 측정 5개 분야

2-2 업무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투명한 업무관리 및 자기점검 실시

- 분기별 ‘클린 자기점검의 날’ 운영 안내

2-3 공익신고 활성화

■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신분노출 우려로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불신 종식
-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 공익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공사소개/윤리경영/클린신고센터

■ 클린신고 직통전화 운영

- 감사부 청렴담당관(780-3534) 신고전화 상설 운영
- 각종 부조리,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낭비 사례 등 신고

3 청렴 공감 제도 개선

3-1 부패영향평가 강화

■ 제·개정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 입안부서에서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예고시 즉시 감사부서 사규 관련 부패영향평가 실시
- 정비 사항 : 특혜유발요인, 예산낭비, 불공정·불투명 요소 등을 중점
- 사규총괄자 평가결과 소관부서 통보

3-2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운영규정 제정) : 2013. 9. 30.
- 청렴시민감사관 외부위원 위촉(안) : 2013. 11. 5.
 - 위촉 대상자 : 강문숙 변호사(법무), 홍찬표 회계사(예산)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 일정 : '클린 JPDC 실무추진팀' 운영에 맞추어 운영
 -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

4 청렴문화 환류 및 확산

4-1 청렴 교육의 질적 내실화 · 고급화

■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1월)

- 대상 : 전 직원
- 목적 : 청렴실천 서약서 낭독 및 서약

■ 찾아가는 ‘청렴의 장’ 마련 및 의견수렴(연중)

- 대상 : 전 직원 (사무직원, 현장직원 별도실시)
 - ※ 현장직원 : 산업안전교육 일정과 병행 실시
- 내용 : 청렴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설명회 (2013년 청렴도평가 결과 공유)
- 방법 : 요청 및 현장방문 맞춤형 연수
- 의견수렴 결과를 각종 제도개선분야 반영

■ 청렴 Help 아카데미 실시(반기 1회)

- 목적 :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공감·지원교육
- 대상 : 전 직원
- 운영 : 연 2회 (3월, 7월)
- 방법 : 외부 청렴관련 전문 강사 초빙

■ 청렴 ‘틈새교육’ 실시(수시)

- 목적 :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하여 청렴의 생활화 및 의식제고 및 우리 공사의 청렴의지 홍보
- 대상 : 전 직원. 각 부서 행사, 워크샵 등
- 방법 : 매월 월례조회 등 행사시작 전, 중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청렴관련 동영상(5~10분 이내)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영
 - ※ 인사총무부 협조(타 교육일정 없을 경우)

■ 관리자 청렴 리더십 향상 과정

- 부서장 연간 1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
 1. 신규 임용자 :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2. 부장급 승진자(3급) : 승진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3. 고위 공직자(기관장 및 임원) :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 직원 연수시 청렴교육 필수 편성 · 운영

- 대상 : 내·외부 공채 합격자
- 방법 : 개발공사 주관 교육과정 편성
 - 교육훈련 1주 내 교육과정 청렴교과 1시간 편성 · 운영

4-2 청렴친화적 환경 확산

■ 청렴 친화적 e-poster 게시

- 운 영 : 업무포털 로그인 화면 ‘청렴 이미지’ 게시(주 1회 교체)
- 게시내용 : 공직윤리, 청렴문화, 행복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한 e-poster
- 청렴 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및 내면화

■ 클린 JPDC 홍보

- 공사 사보를 통한 기획특집 홍보
 - 연 1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의지 및 추진상황 홍보
- 각종 회의 개시 전 청렴 홍보 동영상, 청렴 UCC 상영

■ 청렴 서한문 발송

- 대 상 : 전직원, 업무관련 민원인
- 운영방법 : 반부패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 서한문’ 연 2회 이상 발송

IV. 클린 JPDC 추진체계 구축

1 클린 JPDC 구성 및 운영 방안

■ 「클린 JPDC 기획추진단」 구성 · 운영

- 구성
 - 단장 : 공사 사장
 - 위원 : 각 본부장, 감사부장
- 기능
 - 클린 JPDC 방향 제시, 추진과제 실천 사항 점검
 - 클린 JPDC 추진실적 평가 · 조언
- 운영 : 월례회의와 병행하여 월 1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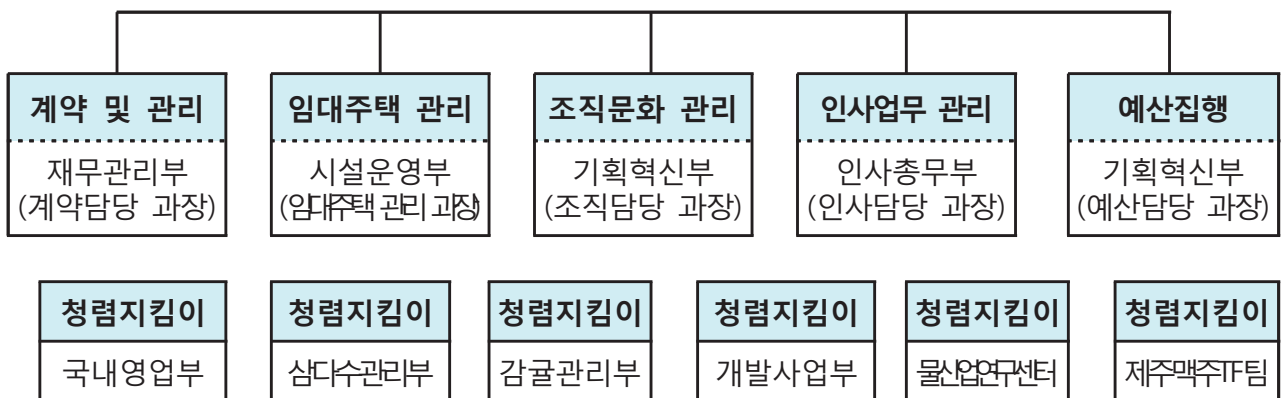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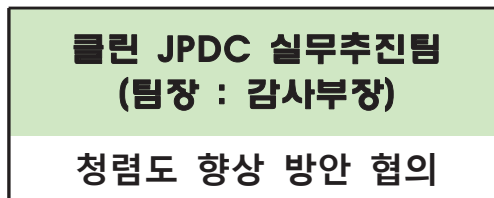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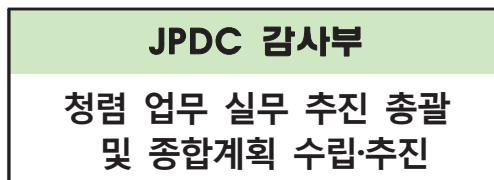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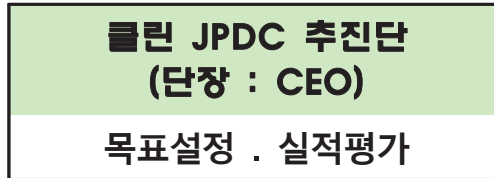
■ 「클린 JPDC 실무추진팀(TF)」 구성 · 운영

- 구성
 - 팀장 : 감사부장
 - 팀원 : 청렴업무 담당자 1명, 청렴도 측정업무 분야별 담당자 5명 外 청렴지킴이

내·외부 청렴도 측정업무 분야별 담당자			
외부 청렴도	계약 및 관리	재무관리부	계약담당 과장 고훈
	임대주택 관리	시설운영부	임대주택관리 과장 신규홍
내부 청렴도	조직문화 관리	기획혁신부	조직담당 과장 김지연
	인사업무 관리	인사총무부	인사담당 과장 강영택
	예산집행	기획혁신부	예산담당 과장 이남호

- 기능
 - 청렴도 향상방안 업무별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3월)
 - 청렴도 측정업무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 분기별 실적 보고
- 운영 : 연 11회
 - 클린 JPDC 청렴지킴이와 통합운영 : 연 4회(3월, 5월, 8월, 11월)
 - 클린 JPDC 청렴지킴이와 분리운영 : 월 1회(3월~12월)

2 클린 JPDC 세부 추진 체계



V. 클린 JPDC 년간 추진일정

분 야	추진과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청렴인프라 구축 마인드 강화	클린 JPDC 추진단, 클린 JPDC 실무추진팀 구성												
	청렴도 측정분야 중점관리												
	사이버 청렴 퀴즈대회 개최									●			
	청렴주의보발령	●				●			●	●			●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청렴 우수기관(우수자) 포상												●
	비위공직자 현황관리(D/B)		●										
2.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	클린 명함 제작												
	클린 자기점검의 날 운영												
3. 청렴 공감 제도개선	클린신고센터 운영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청렴감사관 제도 운영												
4. 청렴문화 환류 및 확산	청렴실천 결의대회	●											
	찾아가는 ‘청렴의 장’ 마련												
	청렴 Help 아카데미			●				●					
	청렴 ‘틈새교육’ 실시												
	관리자 청렴 리더십 향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 e-poster												
	클린 JPDC 홍보(사보)						●						
	청렴 서한문 발송	●								●			

**2014년도
중점 분야별 청렴도 향상 방안**

VI. 중점 분야별 청렴도 향상 방안

< 분야별 담당부서 >

연 번	청렴도 분야	담 당 부 서	비 고
1	계약 및 관리	재무관리부	
2	임대주택 관리	시설운영부	
3	인사 관리	인사총무부	
4	법인카드사용 투명성 제고	인사총무부	
5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및 관리	인사총무부	
6	예산 집행	기획혁신부	

부 서 명	재무관리부	담당자	고 훈	전화번호	064-780-3343
-------	-------	-----	-----	------	--------------

1. 현황 및 문제점

- 부패간접경험이 우리공사 2013년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가장 큰 약점으로 제시되었음. → 2012년도 신규 평가과목(금품·향홍·편의제공 간접경험)
- 업무처리의 신속성 강조

2. 추진 목표

- 계약업무에서 부패사태에 대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 업무공유 강화
-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 관련법령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공사 업무의 투명성 강조

3. 추진 계획 및 개선 방향

- 계약문서상에 계약상대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 행동강령 및 긴급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운영 함. → 2014. 4월 ~
- 입찰참여기회 확대 : 사업부서와 개찰조서를 공유하여 업체다변화 → 2014. 4월 ~
- 현재운용 중인 정보공개시스템 내실화 → 상시운영 중
 - ① 수의계약 내역 공개 : 당월 수의계약내역에 대해 익월 10일한 홈페이지 게시
 - ② 계약법령 공개

외부고객	내부직원
홈페이지내에 계약법령관련 별도메뉴를 활용하여 법령서비스 제공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계약법령 및 유관기관 질의회신 사례 공유

4. 성과 및 기대효과

- 내부시스템을 활용한 부패사례 접수시 업무가 간소화되어 사전부패예방효과가 큼.
- 업체의 다변화로 계약품질의 향상 및 예산절감의 효과와 투명한 경쟁 입찰이 가능
- 계약법령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우리공사 계약업무의 근거 제시

부패방지 시책

1. 계약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계약법령정보 공개 및 관리		○ 계약법령정보 업그레이드 (매월5일 기준) - 대외 : 홈페이지 관리 - 사내 : 전자문서 인트라넷	재무관리부 고 훈 064-780-3343 smileko@pdc.co.kr
2	수의계약내역 공개	지방계약 법시행령 제31조	○ 수의계약내역 홈페이지 공개 (익월 10일한 기준)	
3	계약문서내 청렴관련 정보 삽입		○ 계약문서 내에 청렴이행과 관련 우리공사 연락처 등을 삽입 (2014 .04 ~)	

부 서 명	시설운영부	담당자	신 규 홍	전화번호	064-780-3590
-------	-------	-----	-------	------	--------------

1. 현황 및 문제점

- 건물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처리 신속해결 및 주위환경 개선 요구
- 입주자특례, 및 수요공급 편향해소, 주택 확대 요청
- 입주자 계약기간 연장 희망

2. 추진 목표

- 입주자 방문간담회 개최에 대한 홍보 강화로 외부청렴도 8.8점대로 상승
- 2013년 대비 8.61 → 2014년도 0.19점 상승 기대
- 임대주택 경영정보관리시스템 매뉴얼을 통한 일관성 있는 투명한 업무처리
- 입주자 민원처리 해결을 위해 친절한 행정 서비스 제공

3. 개선방안

- 입주민 방문을 통해 대화의 장 마련과 입주민 청렴윤리의식 제고
- 입주자 민원제기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결 모색
- 입주자 계약기간 연장 해결 (당초 10년 → 변경 20년)
- 입주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 자율적 업무처리와 입주자와의 갈등을 해소

4. 향후 추진계획

- 입주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문간담회 일정
 - 1) 임대주택 입주자 방문간담회 개최 기간 : 2014 .02 ~12월 (33개동 233세대 연중 운영)

2) 임대주택 월별 방문간담회 개최 운영 방법

가) 청렴부패 신고전화 ☎ 064)780-3580(시설운영부장)

나) 청렴관련 상담원

- 시설운영부 사원 : 신 규 홍 ☎ 064)780-3590
- 시설운영부 사원 : 김 진 형 ☎ 064)780-3584
- 시설운영부 사원 : 이 경 민 ☎ 064)780-3587

○ 홍보방법

- 입주자 방문간담회 동별 개최시 전달 교육
- 추석, 설 서한문을 이용하여 입주자에게 적극 홍보
- 임대주택 봉사 활동시 홍보

○ “청렴 실천 자기 점검의 날” 지정, 운영

- 1) 목적: 시설운영부원 전원 스스로 자기 점검을 통해 바람직한 업무습득 및 자율적인 실천을 통한 청렴의식 고취
- 2) 시기: 매월 첫째주 월요일 30분 ~ 1시간내
- 3) 주관: 시설운영부서원 자율 운영
- 4) 내용: 윤리행동강령, 외부(임대주택)청렴도향상 대책, 대민친절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자기 학습의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

부 서 명	인사총무부	담당자	강 영 택	전화번호	064-780-3317
-------	-------	-----	-------	------	--------------

1. 현황 및 문제점

- 비위면직으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신원조회 등을 통해 비위면직 사실이 확인가능하나, 형사 처벌이 아닌 소속기관의 비위면직으로 인한 징계(해임, 파면)여부 확인 어려움.

ex) 비위면직 해당사업장 경력 미제출 시 확인 불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 여부 확인 및 취업대상사업장 비위 면직 확인절차 필요

2. 추진 목표

- 공공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한 채용예정자의 비위면직 여부 확인 단순화

3. 추진 계획 및 개선 방향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발생현황을 반기별로 수합함에 따라 채용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면직자 해당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필요
- 공공기관 : 비위면직 발생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보고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 비위면직 대상여부 확인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회신

4. 성과 및 기대효과

- 비위면직자 확인 간소화에 따른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강화

<붙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취업제한 대상자 : 부패행위로 파면, 해임, 당연퇴직된 공직자

□ 취업제한 대상기관 :

- 공공기관 : 직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업이 제한됨
- 영리사기업체 : 비위면직자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
 - ※ 영리사기업체 기준 :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매년말 행안부장관이 고시, 10년말 3,538개)
- 협회 등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취업제한 기간 : 퇴직일로 부터 5년간

□ 취업확인 및 처리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위면직자의 취업여부를 확인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취업시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부 서 명	인사총무부	담당자	강 성 철	전화번호	064-780-3311
-------	-------	-----	-------	------	--------------

1. 현황 및 문제점

-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제한 업종은 설정되어 있으나, 자율적 사용제한 업종은 추가 설정되지 않음.
- 고급업소 이용제한 및 1인당 사용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법인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활용 미흡

2. 추진 목표

-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확대
- 클린카드 사적 사용 방지 장치 강구
-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3. 추진 계획 및 개선 방향

-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확대

구분	기 준	추 가
유흥업종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 판매점, 카페, 카바레, 요정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충포류판매	

- 클린카드 사적 사용 방지 장치 강구
 -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 교육 실시
-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감사부, 재무관리부 주간단위 모니터링 실시
-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 현재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에서 임원 업무추진비 공개로 확대
-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 각 부서 실제 클린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당 사용 방지방안 교육 실시
 - 사용금지 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 위법·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 환수 등 엄격한 제재조치 강구

4. 성과 및 기대효과

-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확대 및 클린카드 사적 사용 방지로 클린카드의 투명한 사용
-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로 클린카드의 적절한 사용 및 책임 부여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기관장에서 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

부 서 명	인사총무부	담당자	김 신 범	전화번호	064-780-3314
-------	-------	-----	-------	------	--------------

1.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결과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노력이 미진하여,
- 우리공사도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3대 중점분야 비정상적 부패 관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여 청렴한 기업 윤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추진 목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복지부정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차단 방안 강구

3. 추진 계획 및 개선 방향

-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신고센터와 연계한 복지부정 신고배너 설치
-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우리공사 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
 - (신고센터) 신고상담, 접수, 초동조사 → (우리공사) 현장조사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운영
 - 신속하고 원활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현지조사 등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
- 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홈페이지 연결 배너 및 자체 홍보매체(사보 등)를 이용한 홍보 강화

4. 성과 및 기대효과

- 부패방지 신고 활성화를 통한 비정상적 부패관행 근절에 기여

부 서 명	기획혁신부	담당자	이남호	전화번호	064-780-3435
-------	-------	-----	-----	------	--------------

1. 현황 및 문제점

○ 예산집행 내부 청렴도

- 우리공사 : 8.44점, 지방공사 : 8.22점, 전체기관 : 8.06점

구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방공사	전체기관
		2012년	2013년	증감	2013년	2013년
내부청렴도 점수		7.23	7.53	0.30	7.93	7.93
② 예산집행		7.52	8.44	0.92	8.22	8.06
가. 경험		6.62	10.00	3.38	8.50	7.79
업무 추진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5.87	10.00	4.13	7.96	7.49
	위법/부당집행 규모	0.65	10.00	9.35	8.48	7.71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	10.00	10.00	7.24	6.83
운영비 ·여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6.68	10.00	3.32	8.50	7.72
	위법/부당집행 규모	9.06	10.00	0.94	8.65	7.85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	10.00	10.00	7.61	6.56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8.40	10.00	1.60	9.22	8.44
	위법/부당집행 규모	8.71	10.00	1.29	9.37	8.89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	10.00	10.00	8.14	7.07
나. 인식		7.92	8.18	0.26	8.48	8.46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7.92	8.18	0.26	8.48	8.46

○ 우리공사인 경우 경험항목별 부분에서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인식항목별 부분에서는 0.26점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방공사 및 전체기관 측정결과에 비해 낮아져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2. 추진 목표

○ 예산집행 업무 인식 항목별 내부청렴도 10점대 도약

3. 추진 계획 및 개선 방향

- 예산집행의 공개 의무화
 - 예산 및 결산 내역공개(예산확정 및 결산 승인 시)
 - 업무추진비(기관홈페이지 및 클린아이시스템 분기별 공개)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이용확대 및 홍보강화
- 각 부서별 자가 청렴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청렴의식 고취
-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의 인식전환 및 조직 내 소통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도민 의견수렴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4. 성과 및 기대효과

-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
-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및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의 신뢰도 제고

1.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결과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미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기에
- 우리 공사가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내부청렴도 향상 및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 윤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추진 방향

- 2014년도 국권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 3대 중점사항 중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분야 추진

1.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	
【1】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정보 분석·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①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관리
【2】 “생략”	
【3】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①	예산집행, 각종 재정지원 분야 등 재정누수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3.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관리 운영방안

□ 목적

- 제주 청정자원 지하수 지킴이로서 맑고 깨끗한 윤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민 혈세의 잘못된 쓰임새에 대한 도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
-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

- 타당한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및 제안 또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홍보하여 적극적인 정책의 신뢰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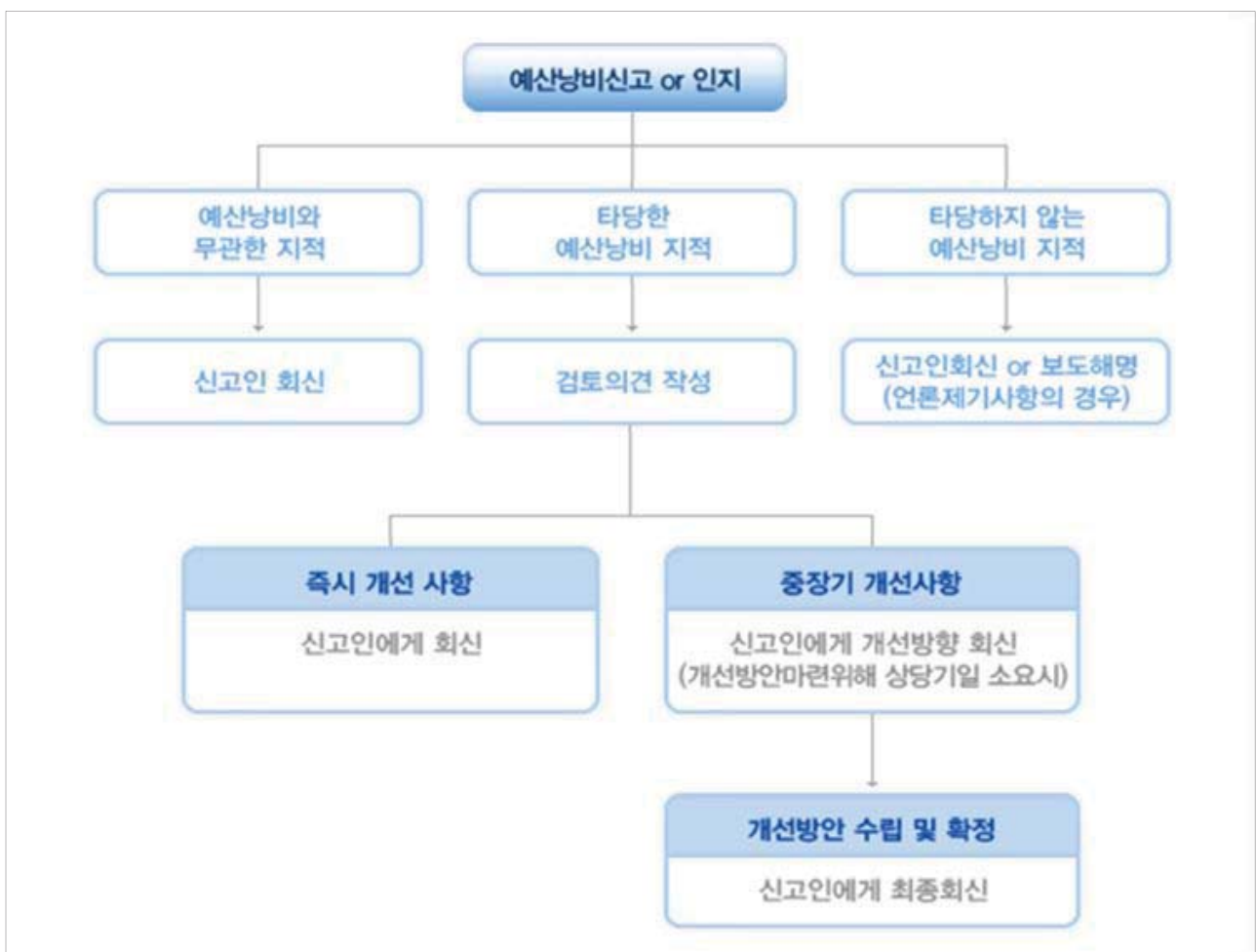
□ 운영방안

중앙부처 40개, 지자체 244개, 공기업 13개 등 300여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콘텐츠를 기획재정부 청렴총괄과에서 기타공공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기에 지침 접수 후 홈페이지 내 콘텐츠 개설 후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 운영부서 : 기획혁신부 및 재무관리부

□ 참여대상 : 제주도민 및 공사 전직원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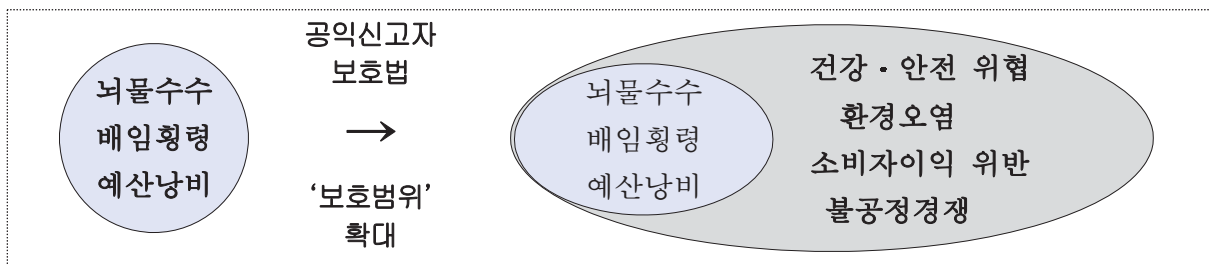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 취지 및 기대효과

-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위협행위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도록 함
 -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가능**



-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확산방지, 국가경쟁력 제고 및 신고자 보호기반 강화를 통한 국민권익 제고

□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 건강·안전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에서 별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 공익신고 대상법률 :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180개

○ 유형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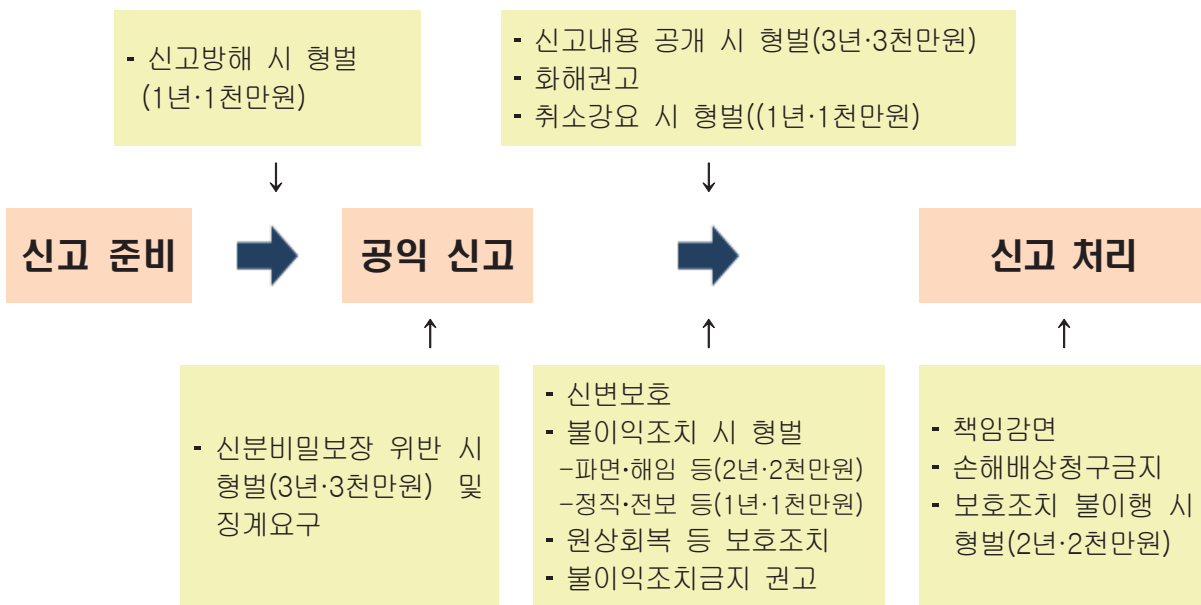
공익침해분야	주요 사례
건강	오염 혈액의 유통, 무자격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안전	삼품백화점 붕괴, 철도교량 부실시공, 특정고압가스의 미신고 사용
환경	낙동강 폐놀 유출,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폐수의 불법 유출
소비자이익	가짜 참기름 유통, 각종 허위·과장 광고
공정경쟁	LPG 가격 담합, 유사석유 판매·사용, 무등록자에 대한 건설용역 하도급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소관 행정·감독 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국회의원, 관련 공공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보호조치 :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등



- 보 상 금 : 벌금·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국가·지자체 수입증대 시 보상
 - 지자체 수입증대 시 권익위가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 구 조 금 : 치료·쟁송·임금손실 등 피해비용 발생 시 구조금 지급

국가공무원등의 정치운동등 지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개정

□ 추진 배경

○ 정치관여지시에 대한 국가공무원등의 이의제기, 직무집행 거부 및 수사 기관 신고 등을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시행(2014.1.14.)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VIP 당부말씀 :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2014.2.4. 국무회의)

□ 정치운동 등 지시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균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균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4.]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안)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
 -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 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 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 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
 - 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공익침해행위,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110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 담합 행위 등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homepage : www.acrc.go.kr

공익신고 방법은?

온라인신고

국민 신문고
<http://1398.acrc.go.kr/>

공사 홈페이지
[http://www.jpdc.co.kr/
intro/ethics/ethics](http://www.jpdc.co.kr/intro/ethics/ethics)

오프라인신고(우편, 팩스, 방문)

- 소관 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바로알기

I

추진배경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정과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상황
 - 현재 각 기관별로 복지사업 상담을 위한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원화된 부정수급 신고·접수체계는 부재
 - 부처·기관별 콜센터가 산재되어 있고, 신고·접수의 전문성 한계로 신고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에 곤란
- ※ 개별기관 행정력만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총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신속히 접수하여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정부 내 일원화된 통합 신고센터(핫라인) 구축 필요
 - 국민들의 인지도·접근성·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복지누수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통합 신고센터(핫라인)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복지 부정수급 척결의 강력한 의지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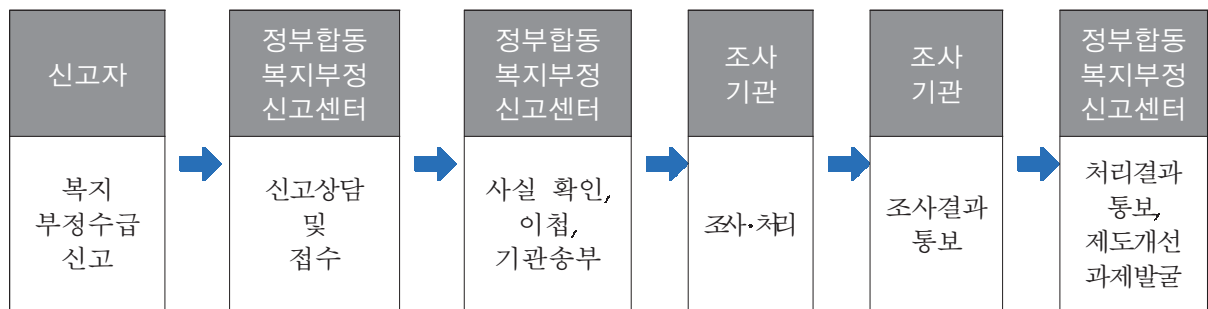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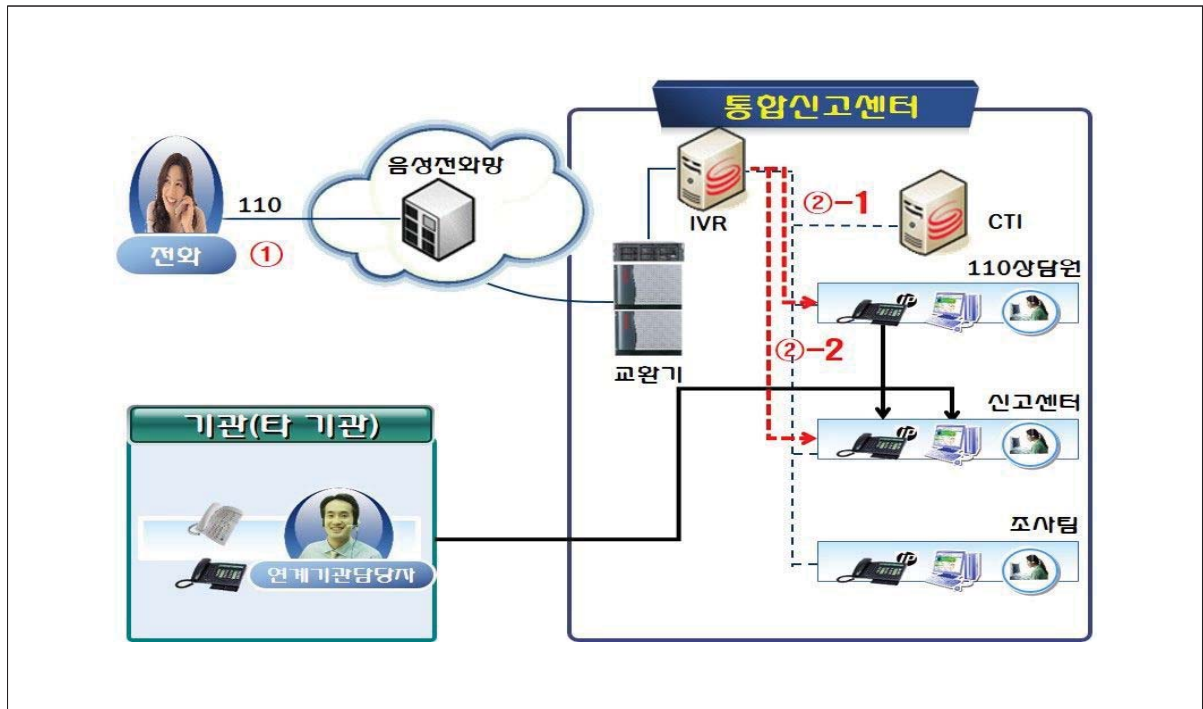
II

신고센터 구축·운영

- 신고 대상
 -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등(급여, 보조금·지원금 등의 인적·물적 지원 일체)을 부정하게 수급 받는 행위
 -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급여, 교육, 의료, 주택 제공 등)
 - 사회복지서비스(보조금·지원금 등의 인적·물적 서비스 등)

□ 업무처리

- 일반 국민이 110(☎)으로 전화를 걸어 복지 부정수급 관련사항이라 하면 곧바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로 연결(신고센터에서 상담 및 신고 접수, 사실 확인 처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국번없이110)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어플과 ☎ 02-3704-9575 /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02)360-6604

국민이 행복한 복지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복지부정신고상담 110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Government Welfare Fraud Report Center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결과와 이의제기, 문의사항 등은 클린신고센터(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pdc.co.kr))로 연락바랍니다.



본 책자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인쇄용지로 제작하였습니다.